

- 「e-나눔」 복지통합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-  
**성동구 - (주)유알피시스템간 업무협약서(안)**

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발주처”라 한다)와 (주)유알피시스템(이하 “계약 당사자”라 한다)은 “ 「e-나눔」 복지통합관리시스템”(이하 “시스템”이라 한다) 보급의 효율화를 위해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,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“시스템”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시스템”이란 정부와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자원 들을 일원화하여 통합·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공평하고 투명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“발주처”에서 자체개발한 복지자원 통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.

**제3조(제휴범위 및 업무분담)** ①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“시스템”을 개발·보급하는데 협력한다.

②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는 제휴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한다.

1. 제휴업무 담당자

구 분	발주처	계약당사자
책 임 자	- 전산정보과장	- 대표이사
담 당 자	- 시스템담당주무관	- 사업팀장

2. 업무분담

구 분	발주처	계약당사자
개 발	- 프로젝트 소스 제공 - 저작권 라이선스 제공 - 새로운 시스템 개발	- 개발인력 투입 - 유지보수
판 매	- 홍보 지원	- 판매에 관한 권한

**제4조(비밀유지)**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 정보 등을 당사자 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수익배분)** ①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는 제품개발 완료 후 상호 협력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며, 판매수익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.

구 분	발주처	계약당사자
기본 판매가	20,000,000원(VAT 제외금액)	
지 분 금 액	5,000,000원	15,000,000원
지 급 시 기	결산공시 후 1개월 이내	
지 급 방 법	성동구청 세무1과 세외수입고지서 수령하여 입금처리	

② 판매 결산공시 기간은 반기(6개월)로 지정한다.

③ “계약당사자”는 결산 공시 후 1개월 이내 “발주처”에 당해 제휴 개발 제품의 판매 수량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“발주처”는 시스템 표준화 작업에 따른 인건비를 감안하여 “계약당사자”가 제공하기로 한 신규 구축 건당 500만원을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유보한다.

⑤ “발주처”는 새로 개발하여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보급에 따른 수익배분은 본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**제6조(권리양도의 금지)** ①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는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협약위반자에게 위반일로부터 발생하는 제품판매 수익금 전액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“계약당사자”는 유지보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전에 “발주처”와 시스템구입 지자체에 통보하여 대처토록 한다.

**제7조(협약의 효력)**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 즉시 발생하며 1년간 유효하다.

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1년 자동 연장되며,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초 협약일자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, 합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“발주처”의 해석을 따른다.

제9조(기타) ① 제휴업무 진행상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가 담당할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이외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법원은 “발주처”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발주처”와 “계약당사자”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2월 10일

“발 주 처” 서울특별시 성동구(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)

구청장 정 원 오 (인)

(대리인: 행정관리국장 )

“계약당사자” (주)유알피시스템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)

대 표 (인)